

| | | |
|----------|------|---|
| 의안 번호 | 2083 | [울산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] 심사보고서 |
|----------|------|---|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. 5. 4.(목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3. 5. 4.(목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3. 5. 23.(화)

2. 제안설명 요지(미래전략국장 노선숙)

가. 제안이유

- 관광진흥을 위해 공모전 수상자에게 상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, 이팔청춘 사진관 시설 사용료를 조정하여 방문객들의 이용도를 높이며,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용어들을 정비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하고자 함

나. 주요내용

- 공모전 시행 및 수상자에게 상금·기념품 지급 근거 마련
(안 제5조의2)
- 축제, 행사 참가자와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광 기념품의 지급 근거 마련(안 제9조)
- 홍보단에게 홍보용품 지급 근거 마련(안 제17조)
-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에 따른 일부 용어 정비
- 이팔청춘 사진관 사용료 조정(【별표 1】)

다. 근거법규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53조 및 제156조
- 「관광진흥법」 제48조 및 제67조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신옥범)

-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관광진흥 공모전 수상자에게 상금 지급 근거 마련과 이팔청춘 사진관 시설 사용료 조정 및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용어들을 정비하여 보다 이해하기 쉽고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으로
- 전반적으로 제반규정을 검토한 바, 상위법에 저촉 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타당 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거법규

지방자치법

제153조(사용료)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56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관광진흥법

제48조(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)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국제관광의 촉진과 국민 관광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 관광 홍보 활동을 조정하거나 관광 선전물을 심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>

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관광홍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사업자등에게 해외관광시장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, 관광 홍보물의 제작, 관광안내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하거나 지도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>

③ 지방자치단체의 장, 관광사업자 또는 제54조제1항에 따라 관광지·관광단지의

조성계획승인을 받은 자는 관광지·관광단지·관광특구·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을 안내하거나 홍보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(屋外廣告物)을 「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. <개정 2016. 1. 6.>

④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,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6. 2. 3.>

1. 문화, 체육,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사업
2.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사업
3.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
4.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
5. 유희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화사업

제67조(입장료 등의 징수와 사용) ① 관광지등에서 조성사업을 하거나 건축, 그 밖의 시설을 한 자는 관광지등에 입장하는 자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할 수 있고, 관광시설을 관람하거나 이용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나 이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입장료·관람료 또는 이용료의 징수 대상의 범위와 그 금액은 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정한다. <개정 2008. 6. 5.>

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입장료·관람료 또는 이용료를 징수하면 이를 관광지등의 보존·관리와 그 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여야 한다.

【별표 1】

[현행]

사용료(제4장 제12조의4 사용료 관련)

| 관광시설명 | 사 용 료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|---|--|
| 이팔청춘 사진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진관 이용 5천원 (기본 1시간) · 사진관 이용 및 의상대여 2만원 (기본 3시간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추가 1시간마다 5천원 추가요금 발생 |
| 별별마당 (마을공방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대관료 1만원 (기본 2시간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추가 1시간마다 5천원 추가요금 발생 |

[개정안]

사용료(제12조의4 관련)

| 관광시설명 | 사 용 료 | 비 고 |
|----------------|--|--|
| 이팔청춘 사진관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진관 이용 ⇒ 1시간/무료 (인원수 무관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1시간 이후 ⇒ 시간 당 5천원 (인원수 무관, 최대 2시간) |
|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사진관 이용 및 의상대여 ⇒ 2시간/1만원 (인당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2시간 이후 ⇒ 시간 당 5천원 (인당) |
| 별별마당 (마을공방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대관료 1만원 (기본 2시간)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· 추가 1시간마다 5천원 추가요금 발생 |